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 노인인권

1) 노인인권 정의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생활노인 권리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 시설생활노인 권리보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학대

1) 노인학대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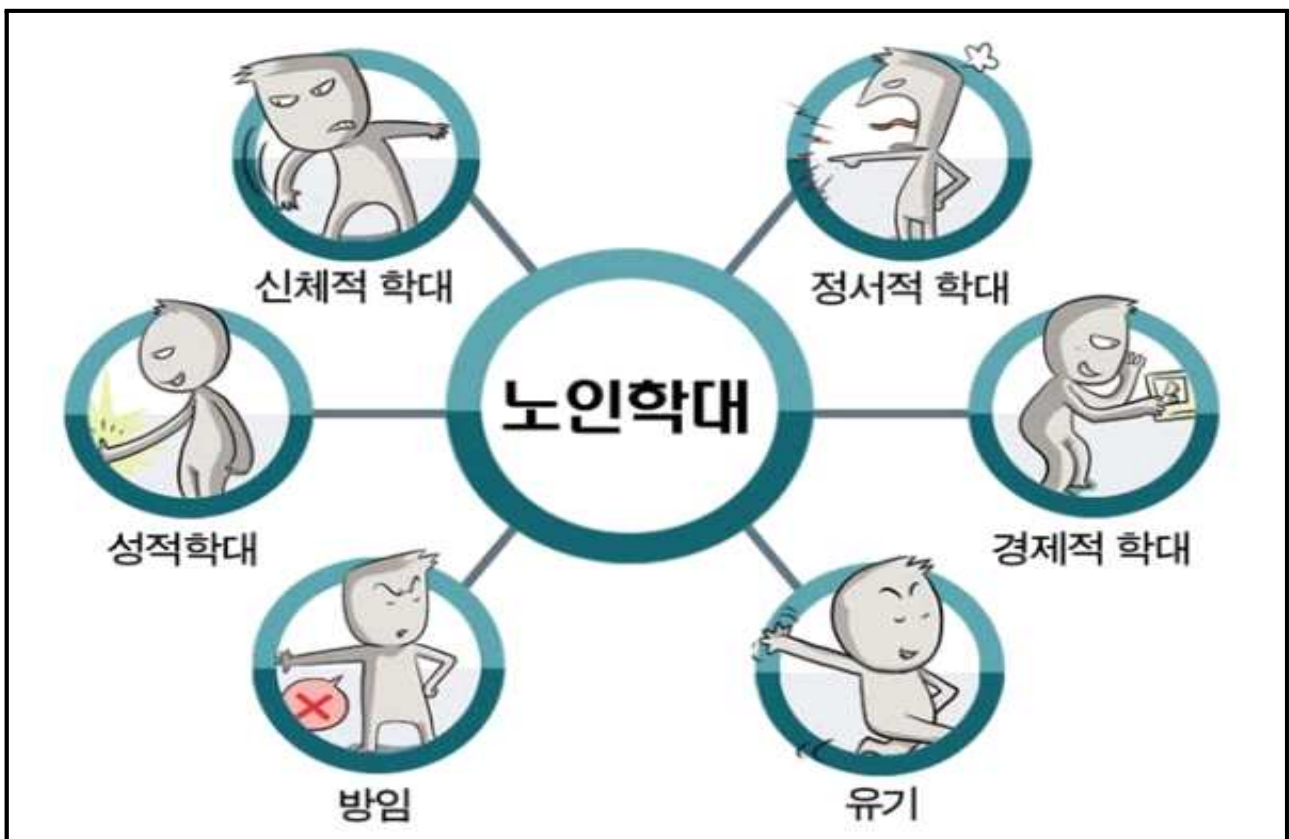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

즉,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말한다.

2) 노인학대 특성

- 지속성: 오랜기간 동안 학대행위가 계속됨
- 복합성: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 반복성: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함
- 은폐성: 묵인되고 은폐되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그래도 내자식”

3) 노인학대 유형



구 분	내 용
신체적 학대	 <p>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p>
정서적 학대	 <p>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p>
성적 학대	 <p>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p>
경제적 학대	 <p>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하는 행위</p>
방임	 <p>부양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p> <p><*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p>
유기	 <p>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p>

구 분	대표적 행위	예측징후
	신체적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꼬집고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는 행위 ■ 감금 또는 거주지 출입 통제 행위 ■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 ■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 생존유지에 필요한 장치, 식사, 음료 등을 단절시키는 행위 ■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 원치 않은 일(노동)을 강요시키는 행위 	예측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의 출혈 흔적 ■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및 영양부족, 체중감소 ■ 묶은 흔적 또는 상처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
	정서적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 ■ 말을 걸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 행위 ■ 일상생활(식사, 생활용품 사용 등)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하는 행위 ■ 사회활동, 연락 등을 방해하는 행위 ■ 위협, 협박하는 행위 ■ 고함, 욕설 등이 행위 ■ 모욕 등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노인과 관련한 결정에서 소외시키는 행위 	예측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 ■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 잠을 잘 못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 가족 또는 보호자와 대화가 거의 없고 눈치 보는 모습 ■ 사람을 만나지 않고 외부 활동을 회피하는 모습
	성적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적인 성관계 강요 및 시도 행위 ■ 원치 않는 스킨십 및 신체일부를 만지는 행위 ■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부의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 케어를 실시하는 행위 	예측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 성기 부분이나 항문 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 성병 진단 ■ 분노 또는 수치심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재산, 주신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공적부조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대리권을 악용하는 행위 ■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 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예측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 ■ 노인의 허락없이 재산관련 등의 서류 정리 ■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 했으나 부양하지 않음 ■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 공적부조(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등)를 가로챈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 은행계좌에 부적절한 거래 발견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식사, 배변처리, 청결 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 ■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하는 행위 ■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행위 ■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하는 행위 	예측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소변 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 신변처리(미용, 목욕, 손톱관리, 옷 입기 등)가 안된 상태 ■ 노인의 건강, 주변 환경의 안전 위험 징후 ■ 불결한 주거환경
	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 왕래를 두절하는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 배회노인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예측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버려져 있음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 시킨 후 연락 두절

4) 노인학대예방 행동지침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1.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2.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4.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5.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6.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7.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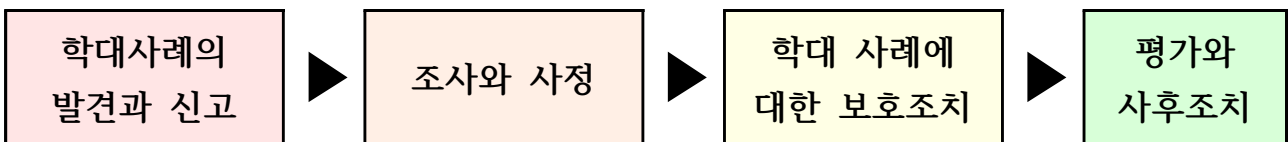
5)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

1. 주위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린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한다.
3.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있는지 살핀다.
4.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1577-1389'로 신고한다.
5.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한다.
6. 기타 노인인권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6)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전화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번없이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비응급상황)
모바일(어플)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

7)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방법



8)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업무를 실시
(경상남도 서부권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